

**「대한민국과 페루공화국간의 자유무역협정」  
발효에 따른 운영지침**

**2011. 7. 29.**

**자 유 무 역 협 정  
집 행 기 획 관 실**

## - 목 차 -

### I. 원산지 증명방식

1. (발효 후 5년 이내) 기관 및 인증수출자에 의한 원산지 증명방식
  - 1-1. 기관발급 원산지 증명서
  - 1-2. 원산지 신고서
  - 1-3. 원산지 신고서 양식
2. (발효 6년 이후) 자율발급에 의한 원산지 증명방식
  - 2-1. 자율발급 원산지 증명서
3. 원산지 증명의 면제
4. 원산지 증명의 유효기간
5. 원산지 증명서(원산지 신고서 포함)의 형식적 오류
6. 원산지 증명서(원산지 신고서 포함) 작성시 유의사항

### II. FTA 실질적 요건 및 특혜신청

7. 직접 운송 원칙
8. 영역원칙의 예외
9. 기록보관요건
10. 특혜관세대우 신청

11. 수입통관 후 특혜관세대우 신청
12. 원산지 증명서(원산지 신고서 포함) 사본인정 여부

### Ⅲ. 기타 집행사항

13. 당사국간 교환사항
14. 특정 농림축산물에 대한 특별긴급관세 조치
15. 중고품의 특혜관세 적용배제
16. 가격밴드 제도
17. 관세면제대상 일시 수입물품
18. 기타 일반적인 집행사항

#### [붙임]

1. 협정 부록 4가-1 기관발급 원산지 증명서
2. 협정 부속서 4나 자율발급 원산지 증명서
3. 페루를 원산지로 하는 특정 농림축산물에 대한 특별긴급관세 물품
4. 페루를 원산지로 하는 물품 중 협정관세 적용을 배제하는 중고품

이 지침에서 ‘한-페루 FTA 협정’은 ‘협정’이라 하고,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동법 시행령, 동법 시행규칙, 및 해당 고시는 각각 ‘특례법’, ‘특례법 시행령’, ‘특례법 시행규칙’, ‘특례고시’라고 지칭함

## I. 원산지 증명방식

### 1. (발효 후 5년 이내) 기관 및 인증수출자에 의한 원산지 증명방식

- 발효 이후 5년의 기간 동안은 “기관발급” 원칙
- 다만, 인증수출자 및 미화 2천불 이하 수출자에 대해서는 “자율발급” 허용

#### 《 한·페루 FTA 기간별 원산지 증명서식 》

구 분	발효 이후 5년간 (’11.8월 ~ ’15.7월)	발효 후 6년부터 (’16.8월 ~)
기관발급	수출자 - 원산지 증명서 (협정 부록 4가-1)	-
자율발급	수출자 - 원산지 신고서 (협정 부록 4가-2)	수출자 - 원산지 증명서 (부속서 4나)

#### 1-1. 기관발급 원산지 증명서

- 발효 이후 5년 동안은 수출자나 수출자의 책임 하에 있는 권한있는 대리인이 신청하면 세관 또는 상공회의소에 의해 원산지 증명서 발급  
- 다만, 개성공업지구에서 생산된 물품에 대해서는 세관에 의해 원산지 증명서 발급 (상공회의소는 불가)
- 원산지 증명서는 하나의 탁송화물을 구성하는 하나 이상 상품을 적용 대상으로 하며 영어로 작성되어야 함

## 1-2. 원산지 신고서

- 원산지 신고서는 인증수출자 또는 미화 2천달러를 초과하지 않는 탁송화물의 수출자가 송장, 인도증서 또는 기타 상업문서\*에 작성

\* 송품장, 포장명세서, 선하증권, 인도증서 등

- 타자, 스탬프, 인쇄를 통해 영어로 작성되며 수기 작성시 잉크를 사용하여 정자로 작성해야 함

- 미화 2천달러 초과여부는 수출자로부터 수하인에게 일시에 송부된 물품 또는 단일의 운송서류에 의하여 수출자로부터 수하인에게 송부된 물품가액을 기준으로 판단

- 운송서류가 없는 경우에는 송품장의 물품가액에 의하여 판단

(원칙) 송품장의 물품가액 기준

(예외) 단일탁송화물에 여러 송품장이 발행된 경우 운송서류에 표시된 물품가액 기준

- 원산지 신고서를 작성하였으나 부정확한 정보가 포함되었음을 인지한 경우에 수출자는 수입자 및 수출국의 관세당국 등에 서면으로 즉시 통지해야 함

- 원산지 신고서는 협정이 정하는 작성요령에 따라 작성되어야 하며, 원산지 신고서 문안\*이 그대로 기재되어야 하고, 단순히 원산지\*, 인증수출자번호만 표시되어 있는 경우에는 적용 불가

\* 협정에서 규정하고 있는 원산지 신고문안이 아닌 한-EU FTA 등 타 협정의 원산지 신고문안을 기재하는 경우 협정 적용배제

\* 원산지는 협정문에 있는 당사자명,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국가명, 당사자 국가의 ISO 코드만 인정 (THE REPUBLIC OF PERU, PERU, PE)

### 1-3. 원산지 신고서 양식 (협정 부록 4가-2)

“The exporter of the goods covered by this document (authorization No.....<sup>1)</sup>) declares that, except where otherwise clearly indicated, these goods are of.....<sup>2)</sup> preferential origin, on the basis of the following origin criteria.....<sup>3)</sup> ”

.....<sup>4)</sup>

.....<sup>5)</sup>

.....<sup>6)</sup>

(작성요령)

1) 원산지 신고서가 협정 부속서 4가(원산지 증명)의 규칙 5에 따른 의미에서의 인증수출자에 의해 작성된 경우, 인증수출자의 인증번호가 반드시 여기에 포함되어야 한다. 원산지 신고서가 인증수출자에 의해 작성되지 않은 경우, 괄호 안의 단어는 지우고 빈 칸으로 남긴다.

2) 상품의 원산지를 영문으로 기재한다.

3) 상품의 원산지 기준이 협정 부록 4가-1(원산지증명서)의 제9란에서와 같이 명기된다.

원산지 결정기준	기재문구
가) 페루와의 협정에 따라 완전생산된 물품	WO
나) 페루와의 협정에 따른 원산지 기준에 부합하는 재료로만 전적으로 생산된 물품	WP
다) 품목별 원산지 기준에 명시된 세번변경, 역내가치포함, 공정 또는 그 밖의 요건에 부합하는 비원산지 재료를 사용하여 어느 한 쪽 당사국의 영역에서 생산된 물품	PSR*
라) 페루와의 협정 제3.15조(영역원칙)의 적용을 받는 물품	OP

\* 해당 물품이 역내가치포함비율 요건의 적용을 받는 경우 그 비율과 함께 “BD” (공제법인 경우) 또는 “BU”(집적법인 경우)를 함께 기재 (예:PSR BD 50%)

4) 원산지 증명서를 작성한 장소 및 날짜를 영문으로 적는다. 다만, 동 정보가 문서 자체에 포함되어 있다면 생략가능하다.

5) 수출자의 성명을 영문으로 정확하게 적고, 서명한다.

\* 인증수출자인 경우에도 수기서명 필요

6) 특별한 사항을 기재한다. 예를 들어, 물품이 협정 제3.15조(영역 원칙)의 적용대상이 되는 경우 다음의 문구를 기재한다 “Article 3.15 has been applied.”

## 2. (발효 6년 이후) 자율발급에 의한 원산지 증명방식

- 협정 발효 후 6년부터는 전면적인 “자율발급” 제도로 전환
- 협정 제 4.1조(원산지 증명서)가 협정 부속서 4가(원산지 증명)를 대신하여 적용

### 2-1. 자율발급 원산지 증명서

- 인증수출자 지정여부와 관계없이 수출자는 변경된 원산지 증명서인 협정 부속서 4나 (원산지 증명서)를 사용하여 자율발급 가능
  - 영어로 작성·서명되고, 인쇄본 또는 전자본이어야 함
  - \* 원산지 증명서에는 발효후 5년 동안의 기관발급형 원산지 증명서와 발효후 6년부터 적용되는 자율발급형 원산지 증명서가 있음에 유의
- 원산지 증명서는 하나 이상 상품의 단일선적에서 발급일로부터 12개월 이내 동일 수입자, 동일 상품의 복수선적 물품까지 적용 가능

## 3. 원산지 증명의 면제

- 수입물품의 과세가격이 미화 1천 달러 이하의 소액물품에 대해서는 원산지 증명 면제
  - 특혜적용을 목적으로 법을 회피하여 부정한 방법으로 수입하는 경우 제외
  - 상업용 여부와 관계없이 미화 1천달러 이하의 여행자휴대품, 우편물, 특송물품에 대한 원산지 증명 면제\*
  - \* 구매영수증, 제품의 원산지 표기 등을 통해 원산지를 간이하게 확인 후 협정 적용

## 4. 원산지 증명의 유효기간

- 원산지 증명서는 수출당사국에서 발급한 날로부터 1년 동안 유효

- 원산지 증명서에 언급된 물품이 비당사국 관세당국의 통제 하에 일시 수용·보관되는 경우 유효기간\* 1년 추가
  - 수입자는 유효기간 연장의 입증을 위해서 보관기간 등이 기재된 비당사국 관세당국이 발행한 문서와 선적서류를 제출·확인 받아야 함
  - \* 하나 이상의 비당사국을 경유하였다 하더라도 유효기간은 1년 초과 불가
- 수입 당사국의 관세당국 통제 하에 일시 수용·보관되는 경우 해당 관세당국이 승인한 기간 동안 유효기간 정지
  - \* [참조] 특례법 시행령 10조(협정관세의 적용신청) 5항
- 원산지 증명은 협정발효 이후 수출입하는 물품에 대해 적용가능
  - \* '11. 8. 1 이후 수출입 신고물품부터 원산지 증명이 가능

## 5. 원산지 증명서(원산지 신고서 포함)의 형식적 오류

- 물품의 원산지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원산지 증명서의 형식적 오류로 인하여 원산지 증명서를 인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해당 물품의 수입 신고인을 통해서 수입자에게 그 오류를 통지해야 함
- 수입자는 통지받은 날의 다음날로 부터 30일 이내 원산지증명서 정정보본\*을 제출해야 하고, 기간내 제출하지 못한 경우 세관은 검증에 착수할 수 있음
  - \* 정정보본은 수정사항, 수정일을 포함하며 원본 발급자에 의해 서명되어야 함

## 6. 원산지 증명서(원산지 신고서 포함) 작성시 유의사항

- 단일 탁송화물에 원산지 제품과 비원산지 제품이 혼재되어 수입된 경우, 비원산지 제품이 달리 명확하게 표시되어 원산지 제품과 비원산지 제품을 확인할 수 있으면 협정관세 적용 가능

- 인증수출자가 아닌 업체가 원산지, 비원산지 제품을 혼재하여 자율 발급을 통해 수출하는 경우 비원산지 제품의 가격은 2천 달러 기준에 산입하지 않음

## II. FTA 실질적 요건 및 특혜신청

### 7. 직접 운송 원칙

- 원산지 상품은 양 당사국간 직접 운송을 원칙으로 함
- 다만, 비당사국 관세당국의 통제 하에 경유·운송되는 다음의 경우에 한하여 인정
  - 비당사국에서 거래되거나 교역되지 않고, 하역·재선적·재포장 또는 상품을 양호한 상태로 유지하기 위해 필요한 공정 이외 어떠한 공정도 거치지 않아야 함
  - \* 상기요건 충족시 제3국 물류창고에 일시 보관 후 수입하더라도 협정관세 적용가능
- 수입자는 협정관세 신청시 원산지증명서 및 직접 운송 요건이 충족되었음을 증명하는 문서\*를 소지해야 함

\* 직접운송요건이 충족되었음을 증명하는 문서

구 분	제출·증명서류
경유·환적	○항공화물운송장, 선하증권, 복합·결합 운송문서등 운송문서
보 관	○항공화물운송장, 선하증권, 복합·결합 운송문서 등 운송문서 ○비당사국의 관세당국 또는 권한있는 당국이 발행한 문서

- 또한 관세당국이 요구하는 경우 유효한 원산지증명서 및 직접 운송서류를 제출해야 함

\* 특례고시 제3-5-1조(환적 또는 일시장치물품 등의 원산지 확인방법) 개정 예정

## 8. 영역원칙의 예외

- 해당물품의 생산공정은 역내에서 중단없이 수행되어야 하고, 일부라도 역외에서 이루어지면 원산지를 불인정하는 것이 원칙
  - 다만, 개성공업지구에서 생산된 100개 품목\*(플라스틱, 고무, 철강, 가전, 시계, 가구 등)에 대해서는 국내 영역에서 가공이 수행된 것으로 인정
    - 이 경우 비원산지 투입의 총가치는 FOB 가격의 40% 이하여야 함
- \* [참조] 협정 부속서 3 나 (영역원칙의 예외) “상품목록”

## 9. 기록보관요건

- 원산지 증명서 기관발급을 신청하였거나 자율적으로 작성·서명한 수출자는 발급일로부터 5년 동안 다음 서류 보관

가. 수출상품의 구매, 비용, 가치 및 그에 대한 지불과 관련된 문서 나. 수출된 상품의 생산에 사용된 간접재료를 포함한 모든 재료의 구매, 비용, 가치 및 그에 대한 지불과 관련된 문서 다. 수출된 형태의 상품의 생산과 관련된 문서 라. 양 당사국이 합의하는 그 밖의 문서 마. 원산지증명의 사본 및 특례법령이 정하는 문서
---

- 수입자는 원산지증명의 사본과 수입 관련문서를 수입신고 수리일로부터 5년 동안 보관
- 원산지증명서 발급기관은 원산지증명서 사본과 증빙 관련자료를 발급일로부터 5년 동안 보관
- 기록 보관방식은 디지털, 전자, 광학, 마그네틱 또는 서면형태를 포함하여 제한없이 가능

## 10. 특혜관세대우 신청

- 수입자는 특혜관세를 신청하기 위해서 수입통관 당시 유효한 원산지 증명서에 근거하여 협정관세적용신청서를 작성·신청해야 함
  - 특레고시 3-2-2조(수입신고수리전 협정관세적용신청) 준용

## 11. 수입통관후 특혜관세대우 신청

- 수입 당시는 원산지 상품이었으나 특혜관세대우를 신청하지 않은 경우에는 수입신고 수리일로부터 1년 이내에 협정관세 적용을 신청해야 함
  - 이 경우 협정관세적용신청서에 원산지 증명서 사본\* 및 세관이 요구하는 그 밖의 문서를 제시해야 함

\* 기발효된 타협정의 경우 수리후 협정관세 적용신청시 원산지증명서 원본제출  
→ 특레고시 3-3-2조(수리후 협정관세 적용신청 의사표시) 향후 개정예정

## 12. 원산지 증명서(원산지 신고서 포함) 사본인정 여부

- 원산지 증명서는 세관에 원본을 제출하는 것이 원칙
  - 다만, 현재 수입신고시 제출서류의 사본을 허용하고 있으므로 사본을 제출하여도 협정관세 적용 가능
  - 이 경우 원산지 증명서 사본 제출 스탬프(특레고시 별표6)를 날인하여 제출하여야 함
- 원산지 증명서의 내용을 확인하기 곤란하거나 물품의 원산지가 불명확한 경우 등 원본을 확인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원본을 제출받아 확인

### Ⅲ. 기타 집행사항

#### 13. 당사국간 교환사항

- 양국 관세당국은 당사국 국내법에 따라 운영되는 인증수출자로 지정된 업체들의 인증번호\*를 교환하고 인증수출자 감독

\* 페루측 인증수출자 번호체계는 상호교환과 동시에 향후 시달 예정

- 대한상공회의소 등 원산지 증명 수입기관의 명칭 및 직인의 최신 등록부를 유지하며 당사국간 수입기관의 명칭 및 직인을 통지

#### 14. 특정 농림축산물에 대한 특별긴급관세조치

- ‘페루를 원산지로 하는 농림축산물에 대한 특별긴급관세조치’\*가 적용되는 물품에 대해서는 협정에 규정된 기준 발동물량을 초과하는 경우 특별긴급관세 조치 시행

\* [참조] 붙임 3. 특정 농림축산물에 대한 특별긴급관세 대상품목

- 기준발동물량을 초과하여 수입된 날의 다음날부터는 특별긴급관세조치가 시행되지만,

- 동 조치가 시행되기 전에 계약\*이 체결되어 국내로 운송 중에 있는 물품과 국내 보세구역에 보관 중인 물품은 협정관세 적용 가능

\* 동일 계약상 물품이라 하더라도 출항 전에 있는 물품은 특별긴급관세조치 적용

- 특별긴급관세조치 시행일부터 수입 신고되는 물품은 서류제출 대상으로 운영 (※조치시행일에 FTA포탈 등에 해당사실 게시)

- 운송서류 등을 통해 출항일을 확인하여 조치시행일 이후에 운송되기 시작한 물품에 대하여 특별긴급관세 적용

## 15. 중고품 특혜관세 적용배제

- ‘페루를 원산지로 하는 물품 중 협정관세 적용을 배제하는 중고품’\*은 서류제출 대상으로 분류하여 운영

\* [참조] 붙임 4. 협정관세 적용을 배제하는 중고품

## 16. 가격밴드 제도

- 페루는 자국 법령에 따라 우리나라에서 수출하는 물품 중 협정 부속서 2라\*에 기재된 상품에 대해서 가격밴드 제도\*\*를 적용

\* 협정 부속서 2라 : 가격밴드 제도의 적용대상이 되는 상품

\*\* 가격밴드 제도(Price Band System) : 자국산업을 보호하기 위해서 해당물품에 대해 수입가격 밴드를 설정하고 수입가격이 동 가격밴드 이하로 낮아질 경우 기본관세 이외 추가관세를 부과하여 가격을 상향하는 제도

## 17. 관세면제대상 일시 수출입물품

- 원산지와 관계없이 다음 물품에 대해서는 무관세 일시반입을 허용
- 이 경우 물품의 일시반입 및 담보제공의 요건 등은 특례법 시행규칙 제11조의 2\* 제2항 및 제3항 준용

가. 일시입국하는 자가 직접 휴대하여 수입하거나 별도로 수입하는 언론 또는 텔레비전 방송용 장비, 소프트웨어, 방송·영화촬영 장비 등 영업활동, 거래 또는 직업 수행에 필요한 전문장비

나. 전시 또는 시연을 위한 상품

다. 상업용 견본품, 광고용 필름 및 기록물

라. 스포츠용으로 반입되는 상품

\* [참조] 특례법 시행규칙 제11조의 2 (칠레와의 협정에 따른 관세면제대상 일시수출입물품) 협정 제2.5조 (상품의 일시반입)

○ 수리 또는 가공\*을 위해서 우리나라와 페루간 수입되는 다음 물품에 대해서는 관세 면제

- 우리나라에서 페루로 수리 또는 가공하기 위하여 일시적으로 수출되었다가 다시 수입하는 물품

- 우리나라에서 수리 또는 가공한 후 다시 수출하기 위하여 페루에서 일시적으로 수입하는 물품

\* 수리·가공을 초과하는 범위 - [참조]협정 제 2.6조 (수리 또는 개조후 재반입되는 상품)

✓ 본질적 특성을 파괴하거나 새로운 또는 상업적으로 다른 상품을 만드는 것

✓ 미완성 상품을 완성 상품으로 변형하는 것

## 18. 기타 일반적인 집행사항

○ 페루와의 협정에 따른 특혜세율 적용, 원산지결정기준 등 협정의 일반적인 집행·적용에 대한 사항은 협정과 특례법 등을 준용하여 업무처리

[붙임 1]

**페루와의 협정에 따른 원산지증명서의 서식**  
**CERTIFICATE OF ORIGIN**  
**ORIGINAL**

1. Exporer's name and address:		Certificate No.:  <b>CERTIFICATE OF ORIGIN</b> <b>Form for Korea-Peru FTA</b>  Issued in _____ (see Overleaf Instruction)			
2. Producer's name and address:					
3. Consignee's name and address:					
4. Means of transport and route (as far as known):  Departure Date:  Vessel/Flight/Train/Vehicle No.:  Port of loading:  Port of discharge:			5. Remark:		
6. Item number (Max 20)	7. Number and kind of packages; description of goods	8. HS code (Six digit code)	9. Origin criterion	10. Gross weight, quantity (Quantity Unit) or other measures (liters, m <sup>3</sup> , etc.)	11. Number and date of invoice
12 Declaration by the exporter:  The undersigned hereby declares that the above details and statement are correct, that all the goods were produced in  (Country) and that they comply with the origin requirements specified in the FTA for the goods exported to  (Importing country)  Place and date, signature of authorized signatory  (장소 및 날짜, 권한있는 서명권자의 서명)			13 Certification:  On the basis of control carried out, it is hereby certified that the information herein is correct and that the goods described comply with the origin requirements specified in the Korea-Peru FTA  Place and date, signature and stamp of authorized body  (장소 및 날짜, 수입기관의 서명 및 소인)		

210mm×297mm[보존용지(1종) 70g/㎡]

## 작성 방법

※ 이 서식은 영문으로 작성합니다.

증명서 번호: 수입기관이 부여한 원산지증명서의 일련번호를 적습니다.

1. 제1란에는 수출자의 성명, 주소(국가를 포함한다)를 적습니다.
2. 제2란에는 생산자의 성명, 주소(국가를 포함한다)를 적습니다. 한 명 이상의 생산자로부터 만들어진 상품이 증명서에 포함되어 있는 경우, 다른 생산자들의 성명, 주소(국가를 포함한다)도 기재한다. 수출자나 생산자가 이러한 정보를 비밀로 유지하기를 원할 경우, “AVAILABLE UPON REQUEST(요청이 있을 경우 제공 가능)”이라고 기재할 수 있으며, 수출자와 생산자가 동일한 경우, “SAME(동일)”이라고 적습니다.
3. 제3란에는 대한민국 또는 페루에 거주하는 수하인의 성명과 주소(국가를 포함한다)를 적습니다.
4. 제4란에는 운송 수단 및 경로를 작성하고, 출발 날짜, 운송수단의 번호, 선적항 및 하역항을 명시합니다.
5. 제5란에는 고객 주문번호, 신용장 번호 등과 같은 추가적인 정보를 적을 수 있습니다. 비당사국 운영인이 송장을 발행하는 경우, 비당사국 운영인의 성명을 적습니다. 페루와의 협정문 제3.7조(최소허용수준)가 적용되는 경우, 이란에 명기될 수 있다.
6. 제6란에는 물품의 연번을 적으며, 물품의 연번은 20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7. 포장의 수량, 종류 및 각 상품의 정식 품명을 적습니다. 품명은 그 상품을 검사하는 세관 공무원이 상품을 식별할 수 있고, 그 상품을 송장 품명 및 상품의 HS 품명과 연계할 수 있도록 충분히 자세하게 적습니다. 상품이 포장되지 않은 경우, “IN BULK(포장되지 않음)”이라고 적습니다. 상품의 품명 끝에는 “\*\*\*”(별 3개) 또는 “ \ ” (사선) 을 더합니다.
8. 제7란에 명시된 각 상품에 대해, HS 품목번호를 6단위까지 적습니다.
9. 제9란에는 수출자(제조사 및 생산자 포함)가 해당 물품에 대한 원산지결정기준을 아래 표에 정한 방법으로 적습니다.

원산지결정기준	기재 문구
가) 페루와의 협정에 따라 완전생산된 물품	WO
나) 페루와의 협정에 따른 원산지 기준에 부합하는 재료로만 전적으로 생산된 물품	WP
다) 별표 6 중 품목별 원산지 기준에 명시된 세번변경, 역내가치포함, 공정 또는 그 밖의 요건에 부합하는 비원산지 재료를 사용하여 어느 한 쪽 당사국의 영역에서 생산된 물품	PSR(1)
라) 페루와의 협정 제3.15조(영역 원칙)의 적용을 받는 물품	OP

- (1) 해당 물품이 역내가치포함비율 요건의 적용을 받는 경우 그 비율과 함께 “BD”(공제법인 경우) 또는 “BU”(집적법인 경우)를 함께 적습니다.
10. 킬로그램으로 표시된 총중량을 이란에 적습니다. 관례적인 경우, 정확한 수량을 표시하는 그 밖의 단위(예: 물품의 부피 또는 개수)가 사용될 수 있습니다.
11. 송장의 번호 및 날짜를 이란에 적습니다. 상품의 송장을 비당사국 운영인이 발행하여 상업용 송장의 번호 및 날짜를 알 수 없다면, 수출 당사국에서 발급된 상업용 송장(원본)의 번호 및 날짜를 이란에 적습니다.
12. 이란은 수출자가 작성 및 서명하고, 날짜를 적습니다.
13. 이란은 권한있는 당국 또는 수입기관의 권한있는 인이 작성 및 서명하고, 날짜를 적고, 소인을 찍습니다.

[붙임 2]

**ANNEX 4B  
CERTIFICATE OF ORIGIN**

**KOREA-PERU FREE TRADE AGREEMENT**

1. Exporter's Name and Address:  Telephone: _____ Fax: _____  E-Mail: _____		2. Blanket Period:  YYYY MM DD                      YYYY MM DD  From: ____/____/____ / To: ____/____/____ /				
3. Producer's Name and Address:  Telephone (optional): _____  E-Mail (optional): _____		4. Importer's Name and Address:  Telephone: _____ Fax: _____  E-Mail: _____				
5. Description of Good(s)	6. HS Tariff Classification #	7. Origin Criterion	8. Producer	9. Value Test	10. Country of Origin	
11. Remarks:  I certify that:  - The information in this document is true and accurate and I assume the responsibility for proving such representations. I understand that I am liable for any false statements or material omissions made on or in connection with this document.  - I agree to maintain, and present upon request, documentation necessary to support this Certificate, and to inform, in writing, all persons to whom the Certificate was given of any changes that would affect the accuracy or validity of this Certificate.  - The goods originate in the territory of one or both Parties and comply with the origin requirements specified for those goods in the Korea - Peru Free Trade Agreement.  This Certificate consists of _____ pages, including all attachments.						
12. Authorized signature:			Company:			
Name:			Title:			
YYYY MM DD Date: -----/-----/-----			Telephone: _____ Fax: _____			

[붙임 3]

페루를 원산지로 하는 특정 농림축산물에 대한 특별긴급관세

1. 닭고기(관세통계통합품목분류표 품목번호 0207.11.1000, 0207.11.9000, 0207.13.1010, 0207.13.1020 및 0207.13.1030)

이행년도	2011.8.1~ 2011.12.31	2012.1.1~ 2012.12.31	2013.1.1~ 2013.12.31	2014.1.1~ 2014.12.31	2015.1.1~ 2015.12.31	2016.1.1~ 2016.12.31
기준발동물량 (톤)	4,361	4,448	4,537	4,628	4,720	4,815
특별긴급관세율(%)	18.0	18.0	18.0	18.0	18.0	13.5
이행년도	2017.1.1~ 2017.12.31	2018.1.1~ 2018.12.31	2019.1.1~ 2019.12.31	2020.11~ 2020.12.31	2021.1.1~ 2021.12.31	
기준발동물량 (톤)	4,911	5,009	5,110	5,212	해당없음	
특별긴급관세율(%)	13.5	13.5	13.5	13.5	0	

2. 오리고기(관세통계통합품목분류표 품목번호 0207.33.0000 및 0207.36.1000)

이행년도	2011.8.1~ 2011.12.31	2012.1.1~ 2012.12.31	2013.1.1~ 2013.12.31	2014.1.1~ 2014.12.31	2015.1.1~ 2015.12.31	2016.1.1~ 2016.12.31
기준발동물량 (톤)	810	826	843	860	877	894
특별긴급관세율(%)	18.0	18.0	18.0	18.0	18.0	13.5
이행년도	2017.1.1~ 2017.12.31	2018.1.1~ 2018.12.31	2019.1.1~ 2019.12.31	2020.11~ 2020.12.31	2021.1.1~ 2021.12.31	
기준발동물량 (톤)	912	930	949	968	해당없음	
특별긴급관세율(%)	13.5	13.5	13.5	13.5	0	

3. 무당연유(관세통계통합품목분류표 품목번호 0402.91.1000 및 0402.91.9000)

이행년도	2011.8.1~ 2011.12.31	2012.1.1~ 2012.12.31	2013.1.1~ 2013.12.31	2014.1.1~ 2014.12.31	2015.1.1~ 2015.12.31	2016.1.1~ 2016.12.31
기준발동물량 (톤)	65	66	68	69	70	72
특별긴급관세율(%)	89.0	89.0	89.0	89.0	89.0	66.8
이행년도	2017.1.1~ 2017.12.31	2018.1.1~ 2018.12.31	2019.1.1~ 2019.12.31	2020.11~ 2020.12.31	2021.1.1~ 2021.12.31	
기준발동물량 (톤)	73	75	76	78	해당없음	
특별긴급관세율(%)	66.8	66.8	66.8	66.8	0	

4. 체다치즈(관세통계통합품목분류표 품목번호 0406.90.1000)

이행년도	2011.8.1~ 2011.12.31	2012.1.1~ 2012.12.31	2013.1.1~ 2013.12.31	2014.1.1~ 2014.12.31	2015.1.1~ 2015.12.31	2016.1.1~ 2016.12.31
기준발동물량 (톤)	730	745	759	775	790	806
특별긴급관세율(%)	36.0	36.0	36.0	36.0	36.0	27.0
이행년도	2017.1.1~ 2017.12.31	2018.1.1~ 2018.12.31	2019.1.1~ 2019.12.31	2020.11~ 2020.12.31	2021.1.1~ 2021.12.31	
기준발동물량 (톤)	822	839	855	872	해당없음	
특별긴급관세율(%)	27.0	27.0	27.0	27.0	0	

5. 천연꿀(관세통계통합품목분류표 품목번호 0409.00.0000)

이행년도	2011.8.1~ 2011.12.31	2012.1.1~ 2012.12.31	2013.1.1~ 2013.12.31	2014.1.1~ 2014.12.31	2015.1.1~ 2015.12.31	2016.1.1~ 2016.12.31
기준발동물량 (톤)	266	271	277	282	288	294
특별긴급관세율(%)	243.0	243.0	243.0	243.0	243.0	243.0
이행년도	2017.1.1~ 2017.12.31	2018.1.1~ 2018.12.31	2019.1.1~ 2019.12.31	2020.1.1~ 2020.12.31	2021.1.1~ 2021.12.31	2022.1.1~ 2022.12.31
기준발동물량 (톤)	300	306	312	318	324	331
특별긴급관세율(%)	243.0	243.0	243.0	243.0	182.3	182.3
이행년도	2023.1.1~ 2023.12.31	2024.1.1~ 2024.12.31	2025.1.1~ 2025.12.31	2026.1.1~ 2026.12.31	2027.1.1~ 2027.12.31	
기준발동물량 (톤)	337	344	351	358	해당없음	
특별긴급관세율(%)	182.3	182.3	182.3	182.3	0	

6. 콩류(관세통계통합품목분류표 품목번호 0713.31.9000 및 0713.32.9000)

이행년도	2011.8.1~ 2011.12.31	2012.1.1~ 2012.12.31	2013.1.1~ 2013.12.31	2014.1.1~ 2014.12.31	2015.1.1~ 2015.12.31	2016.1.1~ 2016.12.31
기준발동물량 (톤)						
0713.31.9000	64	65	67	68	69	71
0713.32.9000	296	302	308	314	320	327
특별긴급관세율(%)						
0713.31.9000	607.5	607.5	607.5	607.5	607.5	455.6
0713.32.9000	420.8	420.8	420.8	420.8	420.8	315.6
이행년도	2017.1.1~ 2017.12.31	2018.1.1~ 2018.12.31	2019.1.1~ 2019.12.31	2020.1.1~ 2020.12.31	2021.1.1~ 2021.12.31	
기준발동물량 (톤)						
0713.31.9000	72	74	75	76	해당없음	
0713.32.9000	333	340	347	354	해당없음	
특별긴급관세율(%)						
0713.31.9000	455.6	455.6	455.6	455.6	0	
0713.32.9000	315.6	315.6	315.6	315.6	0	

7. 맨더린(관세통계통합품목분류표 품목번호 0805.20.9000)

이행년도	2011.8.1~ 2011.12.31	2012.1.1~ 2012.12.31	2013.1.1~ 2013.12.31	2014.1.1~ 2014.12.31	2015.1.1~ 2015.12.31	2016.1.1~ 2016.12.31
기준발동물량 (톤)	7,040	7,181	7,324	7,471	7,620	7,773
특별긴급관세율(%)	144.0	144.0	144.0	144.0	144.0	144.0
이행년도	2017.1.1~ 2017.12.31	2018.1.1~ 2018.12.31	2019.1.1~ 2019.12.31	2020.11~ 2020.12.31	2021.1.1~ 2021.12.31	2022.1.1~ 2022.12.31
기준발동물량 (톤)	7,928	8,087	8,248	8,413	8,528	8,753
특별긴급관세율(%)	144.0	144.0	144.0	144.0	108.0	108.0
이행년도	2023.1.1~ 2023.12.31	2024.1.1~ 2024.12.31	2025.1.1~ 2025.12.31	2026.1.1~ 2026.12.31	2027.1.1~ 2027.12.31	
기준발동물량 (톤)	8,928	9,107	9,289	9,475	해당없음	
특별긴급관세율(%)	108.0	108.0	108.0	108.0	0	

[붙임 4]

폐루를 원산지로 하는 물품 중 협정관세의 적용을 배제하는 중고품

품목번호	품명
8421	원심분리기(원심탈수기를 포함한다) 및 액체나 기체용의 여과 또는 청정기
8421.1	원심분리기(원심탈수기를 포함한다)
8421.19	기타
8421.19.1000	내과용·외과용 및 이화학용의 것
9018	내과용·외과용·치과용 또는 수의용의 기기(신티그래픽식의 진단기기·기타의 전기식 의료기기 및 시력검사기기를 포함한다)
9018.1	전기식 진단용 기기(기능검사용 또는 생리적 변화 검사용 기기를 포함한다)
9018.12.0000	초음파 영상진단기
9018.13.0000	자기공명 촬영기기
9018.14.0000	신티그래픽식 진단기기
9018.90	기타의 기기
9018.90.1000	임신진단기
9022	엑스선이나 알파선·베타선 또는 감마선을 사용하는 기기(내과용·외과용·치과용 또는 수의용인지의 여부를 불문하며, 방사선 사진용 또는 방사선 치료용의 기기·엑스선관과 기타의 엑스선 발생기·고압발생기·조절반·스크린·검사 또는 치료용의 테이블·의자와 이와 유사한 물품을 포함한다)
9022.1	엑스선을 사용하는 기기(내과용·외과용·치과용 또는 수의용인지의 여부를 불문하며, 방사선 사진용 또는 방사선 치료용의 기기를 포함한다)
9022.12.0000	컴퓨터 단층촬영기기
9022.13.0000	기타(치과용의 것에 한한다)